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04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장민전임 mjjang@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예고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 원으로 적용

(3) 시행일

'24.09.01

I. 법령 개정사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 기술인력도 다른 안전 교육대상자와 같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검사기관 기술 인력이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에 전문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이 포함됨을 명확 하게 하며, 고압가스 판매시설도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과 동일하게 공인검사 기관에서 자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별표 31 제 4호 가록)	교육기간 등란 중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를 "1회"로 규정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별표 36 제 1호 표)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의 기술인력란 중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실무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으로 규정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공인검사기관 자율검사 허용 (별표 제 2호의 표)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의 검사구분란 중 "충전"을 "충전·판매"로 한다.

(3) 시행일

'24.09.11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I. 법령 개정사항

(1) 개정 이유

서류 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 일부 물품이 통관 보류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분할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이더라도 B/L 분할신고를 허용,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및 문구 수정 등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 제외(제 13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 중 분할신고되지 않은 물품 내국세 감면 대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B/L 분할신고 대상 확대 (제 1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물품 중 일부가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는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1 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이더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등 (별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중고승용차 등 통관지 세관(인천공항) 확대
자가사용 인정기준 정비 (별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담배 등 기호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규정 동일하게 정비
관세법령규칙, 타법령 인용 규정 수정 및 중복 표현 삭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때에는 → 경우에는 납세고지 → 납부고지 등 용어 변경

(3) 시행일

'24.09.10

II. 입안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을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시 성적서 제출 면제 대상 확대 (안 제 28 조)	-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되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 원료에 대해서도 자사제조용 용도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검사성적서 면제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시기 단축 (안 제 35 조)	- 수입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식, 조제유류 등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 중으로 품목별로 등록 관리 -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시기 단축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적용기간 설정 등 (안 별표 10)	- 부적합 수입식품의 경우 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설정 운영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안 별표 13)	- 우수수입업소 등록자의 현지 위생점검 실시 등 관리노력 고려, 처분경감 대상으로 추가
식품유형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 명확화 (안 별표 13)	- 수입판매업자와 신고대행업자에 대해 식품유형,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

(3) 의견수렴기간

'24.10.16

II. 입안예고

2.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스마트 관세조사 관련 '24년 업무계획 반영, 세관 처분검토회의 절차 규정 개선 수요 등 반영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스마트 관세조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지승인)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 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 시 납보관이 검토·승인
세관 처분검토회의, 조사결과 통지 관련 규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대상) ①개별 적발사안 추징 10 억원 이하, ②조사대상자가 위반事實을 인정(합산 추징 30 억원 이상 건은 모든 적발사항 상정 必)(감사개선) 검토회의 상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필수 검토(검토제외) 고발·송치의뢰 등 보안유지 사항에 해당하는 의견 진술에 대한 검토 내용·처리결과를 결과통지 시 제외

(3) 의견수렴기간

'24.10.00

II. 입안예고

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 (안 제 3 조~제 5 조까지 등)	-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필증 발급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함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신청 절차 마련 (안 제 17 조의 3 별지 등)	-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함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 (안 제 19 조 및 별표 4)	- 소비자가 외부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갈음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안 별표 5 및 별표 7)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고의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

(3) 의견수렴기간

'24.11.04

II. 입안예고

4.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 24 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해외 규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로 사용시 위해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타법률에서 이미 취급이 전면 금지된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백석면	-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4-27(청석면 등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백석면을 추가. 조정
납	-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8의 납을 납과 그 화합물로 확대하고, 납과 그 화합물을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염화메틸렌	-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가정용, 건축용, 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등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고유번호 06-5-15) 지정

(3) 의견수렴기간

'24.10.16

II. 입안예고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관세행정의 투명성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AEO 관련 고시를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고 경쟁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지정신청을 하도록 수탁기관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AEO 심사지원 업무 위탁사업의 공정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규준수도(8분기)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 근거 신설 (제 6 조)	-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분기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정기 통관적법성 자율 검증 의 근거 마련 (제 20 조의 2)	- 통관적법성에 대해 매년 업체가 자율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검증 결과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등 간소화
혜택 정지 관련 적용시점 등 명확화 (제 25 조)	- AEO 업체가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혜택정지가 가능함을 명확화 등
공인취소 사유 중 혜택정지 기준 명확화 (제 25 조의 2)	- 공인유효기간 내에 혜택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5회 산정 기준을 해당 부문으로 한정
AEO 심사지원 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 지정절차 개선 (제 33 조~제 35 조)	- AEO 심사지원 업무 위탁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 등
통관절차 등의 혜택 정비 (별표 2)	- 관세조사 제외 혜택은 수입 부문에 한정 하도록 명확화 등

(3) 의견수렴기간

'24.10.17

II. 입안예고

6.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입안 이유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 높은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통합하면서 관련 조문 정비하고, 자율점검 표 서식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서면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검사 및 제재 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훈령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검사에서 제재까지 실무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고, 각 훈령의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수 감축검사훈령(30 개조항) + 제재훈령(26 개조항) → 검사 및 제재훈령(47 개조항)
조문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훈령이 법령적용을 배제하거나, 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규정은 삭제·정비 (예 : 제재훈령 § 1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폐지(§ 32)
절차개선 및 미비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활한 서면검사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 및 절차개선,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간 보장, 그간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명문화

(3) 의견수렴기간

'24.10.17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무허가수출 행정처분 개정

-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총 1,402개로 확대
- 반복 · 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9.9.(월)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제 35 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 상황허가 : 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 필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 개 품목 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 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 속절삭가 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 상세목록은 '고시 별표 2 의 2' 러시아·벨라루스 통제품목 1160~1402 번에서 확인 가능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9.(월)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분 수출(9.8.(일) 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 반복 · 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 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 불 미만)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 및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김정예 과장(044-203-4830)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 생활화학제품, 장신구 등 558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58 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 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 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 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 개로, 이 중 69 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 개, 금속장신구 49 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 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 237 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 제 1 항제 3 호 : 세관장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환경부는 이들 69 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지영 과장(044-201-6750)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3.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등 2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프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사이 캐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 산업피해조사과: 한상덕 과장(044-203-5860)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한-슬로바키아 통상·산업·에너지 포괄적 협력 확대기반 구축

- 정상 임석 하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 유럽 제조업 거점인 비셰그라드 4국(V4)과 경제협력 확대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데니사 사코바(Denisa Saková)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9월 30일(월) 서울에서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총리 임석 하에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TIPF)」MOU를 체결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우리의 유럽연합(EU)내 10대 교역국으로 우리 기업 140여 개사가 진출하여 양국 간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력 분야도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다.

TIPF는 산업공급망, 민간협력 촉진을 아우르는 협력 채널로 동 채널을 활용해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산업,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 업계·기관 간 교류 확대 등 포괄적 산업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슬로바키아 TIPF는 우리가 체결한 26번째 TIPF로 유럽의 제조업 거점인 비셰그라드 4국(V4)과 TIPF를 모두 체결하여 V4 국가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對V4 교역 규모는 '04~'23년 중 연평균 15% 증가하여 지난해 약 26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하였으며 협력 분야도 자동차, 가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완성된 한-V4 TIPF 채널은 V4 국가와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데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이상현 과장(044-203-5660)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우리 자동차 업계에 부담 최소화

미국 상무부는 9.27(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기업의 경우, 알맥은 덤팡마진이 0%로 산정되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신양 및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팡마진이 부과되었다.

우리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금번 최종판정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되어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팡마진(66.4%)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배터리케이스·공조시스템·전자제동장치·사이드실)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어 우리 자동차 업체의 대미수출 관세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민·관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 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3.13%)이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경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왔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 윤정원 과장(044-203-5920)